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10. 28 선고 2020가단1052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

담당변호사 이재웅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

변 론 종 결 2021. 8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이 경남 함안군 D 전 1,858㎡에 관하여 2017. 11. 30. 체결한 매매계약을 23,012,547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012,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2017. 4. 25. 3,000만 원을 이자 연 5.5%(이자지급 매 6개월마다 10월 25일, 4월 25일), 변제기 2022. 4. 24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이들 사이에 위 내용을 담은 2017. 5. 10.자 공정증서(갑 제2호증)가 작성되었다.

나. C은 그의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전 1,858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2017. 11. 30. 매매대금을 7,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7. 12. 5.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E조합, 채권최고액 2,600만 원인 2007. 5. 17.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. 12. 4.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.

라. 피고는 2017. 12. 12.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1,600만 원을 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에게 2016. 4. 12. 1,0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2017. 4. 25.에는 3,000만 원을 이자 연 5.5%, 변제기 2022. 4. 24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 한편 원고는 C 측으로부터 위 차용금 1,000만 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변제받았고, 위 차용금 3,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. 12. 12. 1,600만 원을 변제받았다. 따라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. 11. 30. 당시 원고에 대하여 3,700만 원(= 4,000만 원 - 300만 원) 및 그 중 3,000만 원에 대하여 2017. 4. 26.부터 연 5.5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.

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. 11. 30.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는 사해행위에

해당한다.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E조합, 채권최고액 2,600만 원인 2007. 5. 17.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. 12. 4. 말소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23,012,547원(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,0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,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. 7. 23.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3,012,547원을 기준)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3,012,5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C에게 2017. 4. 25. 3,000만 원을 이자 연 5.5%, 변제기 2022. 4. 24.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. 원고는 그 외에도 C에게 2016. 4. 12. 1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갑 제1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6. 4. 12. C에게 수표로 1,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C로부터 그 이전인 2015. 2. 13. 475만 원, 2015. 11. 23. 300만 원, 2016. 1. 13. 250만 원 등 합계 1,02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. 4. 12. C에게 교부한 수표액 1,000만 원은 위 1,025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(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) 위 1,000만 원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2017. 4. 26.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(다만 2017. 12. 12. 1,600만 원이 변제됨으로써 변제충당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감축되었다)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을 제7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(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 7,000만 원), 경남 함안군 F 대 579㎡ 및 그 지상

건물, G 전 164㎡, H 전 222㎡, I 대 23㎡, 경남 함안군 J 답 2,595㎡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인 위 부동산들의 시가가 얼마였는지 및 소극재산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.

따라서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(한편 피고는,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, 위와 같이 C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,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권홍